



등 록 번 호 : 20241353

최초 등록일 : 2024.10.04.

최종 등록일 : 2024.10.04.

## [미식낙곱새]

### 정 보 공 개 서

(주)장충동왕족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장충동왕족발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75(노은동)

[대표 전화번호] 043) 266-3300 [대표 팩스번호] 043) 266-330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043) 266-330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사말

“음식은 사랑입니다.”

70년대 모든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 불만 없이 남편과 자식의 성공을 위해 정성을 들여 따뜻한 한 끼를 만들었던 어머니의 사랑에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은 산업현장에서 힘을 다해 일을 했고, 자식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한 한 끼였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제대로 된 한 끼, 정성과 사랑이 있는 한 끼를 위해 35년간 음식업을 운영하면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한결 같은 마음으로 경영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유혹들이 많았지만, 변함없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신념, 음식은 사랑이라는 경영철학은 지금의 주식회사 장충동왕족발을 성장하게 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주식회사 장충동왕족발 대표이사 신신자입니다.” 앞선 인사말처럼 그만큼 밥은 우리 삶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의 인사말입니다. 또한 굶지 않는 이웃을 위한 배려가 있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이제 장충동왕족발이 새로운 시작으로 젊은 감각의 배달브랜드를 만들어 제대로 된 한 끼의 힘을 젊은층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식낙곱새를 시작하는 예비 가맹점 대표님, 또는 결심한 대표님 ‘식사는 하셨는지요?’ 치열한 원가경쟁, 프랜차이즈의 횡포, 업종간의 경쟁에 밥 한 끼 편하게 할 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충동왕족발의 변함없는 맛이 장수 브랜드를 만들었듯이 미식낙곱새와 함께 그 역할을 가맹점주님들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이윤을 남기는 생명력이 짧은 프랜차이즈보다는 30년 50년을 장수브랜드로 만들어갈 대표님과 같이 한 술밥을 먹고 싶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미식낙곱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평 6,000평의 위생적인 제조시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충족시킨 HACCP시설, 그리고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물류시설로 다른 가맹점과는 분명 차별점이 있는 우수한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어떠한 기업도 (주)장충동왕족발과의 경쟁력이 없음을 지난 과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던 음식에 대한 정성 들인 사랑을 젊은 고객층에게 바른 먹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사의 사명으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미식낙곱새를 선택하여 주신 가맹점주님께 지속적으로 바른 프랜차이즈 문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미식낙곱새는 가맹점 대표와 함께 더 발전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가맹점 대표님과 더욱 단결해 최고의 맛과, 최고의 제품,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님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장충동왕족발 CEO 신신자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 (주)장충동<br>왕족발 | 미식낙곱새 외 1  |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75(노은동)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01.01.22 | 2001.01.22           | 신신자     | 043)<br>266-3300 | 043)<br>266-3305 |
|               | 법인등록번호     | 160111-0110900       | 사업자등록번호 | 314-81-39043     |                  |

### 2.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대표이사        | 신신자   | 미식낙곱새 외1 |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75(노은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신자                  | 043-266-3300 | 043-266-3305 |
| 사용인<br>(임원) | 권현주   | 미식낙곱새 외1 |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75(노은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신자                  | 043-266-3300 | 043-266-3305 |
| 사용인<br>(임원) | 김민자   | 미식낙곱새 외1 |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75(노은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신신자                  | 043-266-3300 | 043-266-3305 |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명칭       | 미식낙곱새                                                                             |                           |
| 상호       | 미식낙곱새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 상표 출원번호:<br>4020240087116 |
| 광고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연도    | 총자산        | 총자본        | 총부채        | 매출액        | 영업 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35,014,454 | 13,557,897 | 21,456,557 | 26,250,692 | 1,650,733 | 1,594,356 |
| 2022년 | 35,480,118 | 13,681,038 | 21,799,080 | 30,279,223 | 969,720   | 377,140   |
| 2023년 | 37,652,577 | 15,038,073 | 22,614,504 | 35,022,911 | 1,982,708 | 1,357,035 |

그 근거자료는 [별첨]합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1)’의 매출액과 같음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직위  | 사 업 경 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가맹사업<br>관련임원 | 신신자 | 대표이사 | 2001.02 ~ 현재 | (주)장충동왕족발<br>대표이사 | 회사 업무 총괄          |
|              | 권현주 | 영업상무 | 2006.05 ~ 현재 | (주)장충동왕족발<br>기획이사 | 기획, 특판<br>가맹사업 관리 |
|              | 김민자 | 관리부장 | 2001.11 ~ 현재 | (주)장충동왕족발<br>관리차장 | 회계, 자금            |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전년도 말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2023년12월 31일 | 상근     | 비상근 | 141    |
|              | 3      | 0   |        |

##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주)장충동왕족발 | 가맹사업 경영 | 2001.01.22. ~ 현재 | 장충동왕족발보쌈(등록번호 : 2008050000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br>신청여부<br>(일자) | 출원번호및<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br>신청자) | 등록 만료일 |
|-------------------------------------------------------------------------------------|----------------------------|-------------------------|-------------------------|--------------------|--------|
|  | 서비스표사용<br>제품사용 및<br>홍보문안사용 | 출원일자 :<br>2024.05.13    | 출원번호 :<br>4020240087116 | 주)장충동왕<br>족발       |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출원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 특허 정보원 특허 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미식낙곱새」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준비 중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 가맹본부<br>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장충동<br>왕족발 | 미식낙곱새 | 신신자 | 가맹사업준비중    |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75(노은동) |

##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미식낙곱새 | 대분류 | 소분류      |
|       | 한식  | 불족발, 낙곱새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수

(단위:개)

| 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  |  |  |  |  |  |
|------|--|--|--|--|--|--|
| 2022 |  |  |  |  |  |  |
| 2023 |  |  |  |  |  |  |

6. 「미식낙곱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는 “미식낙곱새”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가맹본부 | (주)장충동<br>왕족발 | 장충동왕족<br>발보쌈 | 20080500005   | 한식 | 87/0        | 87/0        | 79/0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미식낙곱새」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 지역 | 2023년 말<br>가맹점 수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평당<br>평균 | 상한 | 평당<br>상한 | 하한 | 평당<br>하한 |    |
| 전체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경기 |                  |                   |          |    |          |    |          |    |
| 경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광주 |                  |                   |          |    |          |    |          |    |
| 대구 |                  |                   |          |    |          |    |          |    |
| 대전 |                  |                   |          |    |          |    |          |    |
| 부산 |                  |                   |          |    |          |    |          |    |
| 서울 |                  |                   |          |    |          |    |          |    |
| 울산 |                  |                   |          |    |          |    |          |    |
| 인천 |                  |                   |          |    |          |    |          |    |
| 전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제주 |                  |                   |          |    |          |    |          |    |
| 충남 |                  |                   |          |    |          |    |          |    |
| 충북 |                  |                   |          |    |          |    |          |    |
| 세종 |                  |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미식낙곱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해당없음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 총판)의 일반정보

당사는 「미식낙곱새」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825,198천원입니다. 해당 [미식낙곱새]의 [2023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없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비공개) | -  | -                      | -    | -   | -  |
| 광고, 판촉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신한은행    | 대전기업금융지점 | 대전 서구 둔산동<br>1167번지 | 042-484-6750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등의 체결내역

해당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식낙곱새”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 “점포의 임대비용과 기타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예치대상여부  | 비고   |
|---------|---------------|---------|------|
| (최초)가맹비 | 가맹본부          | 전액예치    | 확정금액 |
| 교육비     | 가맹본부          | 전액예치    | 확정금액 |
| 보 증 금   | 가맹본부          | 전액예치    | 확정금액 |
| 기 타 비 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가) 신규 가맹계약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3,300 | 계약체결 후<br>10일 이내 | 영업개시 이전까지<br>계약해지 | Know-how<br>제공대가,<br>개업지원 등의<br>서비스가 제공시<br>해당대가는<br>반환하지 않음 | 반환 시<br>당사에서 정한<br>기준의 위약금을<br>공제 |
| 교육비 | 2,200 |                  | 교육시작 전<br>계약취소    | 교육시작 이후                                                      |                                   |
| 총계  | 5,500 |                  |                   |                                                              |                                   |

#### 나) 양도 가맹계약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신규가맹계약과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면제    |            |                  |                  | 이전 가맹점의 잔여계약기간 인정 |
| 교육비 | 2,200 | 교육시작 7일 이전 |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 총계  | 2,200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물품보증금 | 3,000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계약 종료시 | 본사가 공급한 물품파손 및 미수금 미정산시 |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 천원)              |
|-----|--------------------------|
| 합계  | 8,500                    |
| 가맹비 | 3,300 (부가세 포함)           |
| 교육비 | 2,200 (부가세 포함)           |
| 보증금 | 3,000 (부가세 없음/ 보험증서대체가능)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평당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인테리어<br>(점포내장공사) | 가맹사업자<br>자율 | -    |      |      |      |    |
| 간판               | 상동          | -    |      |      |      |    |
| 설비, 의탁자          | 상동          | -    |      |      |      |    |
| 집기               | 상동          |      | -    |      |      |    |
| 포스               | 미정          | 업체협의 |      |      |      |    |
| 총계               |             | -    |      |      |      |    |

[ 미식낙곱새는 기존 외식업체에 샵인샵 형태로 개설되는 배달전문 매장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은 가맹점주 자율대상입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주체                   | 선정기준                                                                      |
|------------------------|---------------------------------------------------------------------------|
| 가맹점희망자<br>또는<br>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

6)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 , 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 운영을 위한 법적 문제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                        | 요식업자기준 국가 보건 위생증 검사를 필할 것 |
|        |                        | 만 19세 이상 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        |                        | 요식업자기준 국가 보건 위생증 검사를 필할 것 |
|        |                        | 만 18세 이상 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미식낙곱새” 가맹점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등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을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선정에 맡기며,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품목 선정 및 납품업자를 추천할 수 도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해당없음          |                      |                        |                              |              |                         |
| 광고분담금<br>(TV,라디오,공중.대중매체) | 시행광고사 또는 가맹본부 | 실비                   | 매월 말일                  |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 분담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참조 |
| 광고분담금<br>(지역별일반광고)        | 시행광고사         | 가맹본부 50%<br>가맹점 50%  |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 분담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참조 |
| 교육비                       | 해당없음          |                      |                        |                              |              |                         |
| POS                       | 해당없음          |                      |                        |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상대방           | 가맹본부 부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 개별청구                   |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              |                         |
| 지연 이자                     | 상대방           | 연 20%                | 개별 청구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              |                         |

※ 당사의 광고비 분담 기준은 (주) 장충동왕족발 가맹점 계약서 제16조(광고 선전 및 판촉행사)에 의거 시행 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한 도매가격을 넘는 내가(이하 “자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제 재고 수량 조사 및<br>선입선출관리 사항 점검 | 수시  | 문의: 가맹본부 |
| QC관리  | 품질관리 이행여부 점검                  | 월1회 | 문의: 가맹본부 |
| 회계관리  | 세무신고 등                        | 년1회 | 문의: 가맹본부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기간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2000년 11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며, 브랜드명에 따른 도안이나 디자인, 도형 등은 관계법으로 보호 됩니다.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계약기간에 한하여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기간에 한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양수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미식낙곱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장충동왕족발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별도로 양수인은 가맹본부인 (주)장충동왕족발에 교육비 일금 이백이십만 원(₩2,200,000)(부가세 포함)와 물품보증금 일금 삼백만 원(₩3,000,000)(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 일금 삼백삼십만 원(₩3,300,000)(부가세 포함), 교육비 일금 이백이십만원(₩ 2,200,000)(부가세 포함), 물품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7.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식낙곱새”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맹점계약서 7조의 기



준에 의거 이행하여야 하며, 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위반사  
유별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충동왕족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건

##### 제 7 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 종료 후 “을”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물품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반환된다.

1. 『미식낙곱새』의 핵심 Know-how 사용금지
2.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 금지
3. 간판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4. “갑”의 임대물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이 완료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함
5. 가맹본부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 사용금지
6. 당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software)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및 철거의 비용은 본 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을”은 “갑”의 『미식낙곱새』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갑”에게 확인한다.

④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갑”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⑤ 제7조 제1항 각 호 위반사유별로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X지체일  
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  
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미식낙곱새』 영업표지가 명시된 주방기기 및 판촉시설물 중 “갑”이 판매한 물품에 한하여 감가상각에  
의한 사용가능 여부를 선별 후 잔존가액으로 “을”과 협의하여 인수 할 수 있다. 기타 “을”이 자체 제작한  
판촉물(전단지, 스티커, 오프너, 배달봉투 등) 중 『미식낙곱새』 브랜드명이 명시된 물품일체를 “갑”과 협의  
하여 가격 결정 후 “갑”에게 양도하거나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상품의 하자검사와 반품]

④ “을”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미개봉이나 미사용의 완전한 상품 · 자재에 한해 “갑”  
으로부터 구입한 금액의 70%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상품 · 자재가 파손, 변질된 경우 혹은 유통  
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반품이나 하자에 관한 세부운영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미식낙곱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 및 협력을 최대한 구하여 가맹본부의 역할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사항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거래주선의 대가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가격결정

###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품 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 고 |
|--------|--------------------------|----------------------------------------------|-----|
| 미식불죽발  | 원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경고<br>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br>3회 위반: 계약해지 |     |
| 미식고깃국수 |                          |                                              |     |
| 미식낙곱새  |                          |                                              |     |
| 미식소곱창  |                          |                                              |     |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및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미식낙곱새”와 유사한 업체 및 업자인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 고 |
|-----------------------|----------------------------------------------|-----------------------------------|-------------------------------------------------|-----|
| 고객 및 당사의<br>가맹점 외 사업자 | (주)장충동왕족발<br>에서 생산 공급한<br>판매 가능한 전품목<br>및 용역 | 거래 상대방 별로<br>기재된 제품은<br>판매 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경고<br>2회 위반: 서면<br>시정요구<br>3회 위반: 계약해지 |     |

### 3) 가맹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품 명  | 권장가격(원)    | 가격통보방법                             | 비 고 |
|--------|------------|------------------------------------|-----|
| 미식불족발  | 계약시 가격표 제공 | 가격 변동 시<br>홈페이지 및<br>이메일 등으로<br>공지 |     |
| 미식고깃국수 |            |                                    |     |
| 미식낙곱새  |            |                                    |     |
| 미식소곱창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 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불족발, 낙곱새를 당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판<br>매하는 업종 | 미식낙곱새       | -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  
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  
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 미식낙곱새와 본사의 다른 브랜드인 장충동왕족발보쌈의 경우 메뉴와 가격, 매장운



영향적 등 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 기준 행정 구역별 상주인구 5만명당<br>1점포를 기준으로 양당사자간 협의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br>→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br>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br>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

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미식낙곱새』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년 )이고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 2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                  |



|                                                                            |              |
|----------------------------------------------------------------------------|--------------|
| 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5조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채무가 배송물품대금 기준으로 2회 이상 미납시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
| ○ 『미식낙곱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갱신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체결 후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1항  |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 변경한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영업일수를 위반한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상호협의를하거나 약정된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서비스불량과 제품가공, 처리의 미숙으로 소비자에게 년3회 이상의 항의가 있는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주제품인 족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품의 품질기준 준수를 위반한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공방법,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적정재고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한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거나 영업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의 조리방법, 판매상품의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속한 건물이 소실되거나 파손·훼손되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 1항 |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임대차계약종료나 기타 원인으로營業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 1항 |
| 기타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6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제6조 2항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6조 2항  |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제6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제6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제6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제6조 2항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쌍방의 서면 합의 | 제 32 조  |

당사의 협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결정 |

####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br>(※양도승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영업부<br>(043-266-3300)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승인조건

| 양도 승인 조건                                                                                                                                                                                                                                                                                                                                                                                                                                                                                                           | 관련 계약조문 |
|--------------------------------------------------------------------------------------------------------------------------------------------------------------------------------------------------------------------------------------------------------------------------------------------------------------------------------------------------------------------------------------------------------------------------------------------------------------------------------------------------------------------|---------|
| <p>양도에 대한 승인 : “갑”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을”이 “갑” 및 “갑”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li> <li>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을”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갑”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li> <li>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li> <li>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갑”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li> <li>5. 양도하는 “을”이 서면으로 “갑”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경우</li> <li>6.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li> </ol> | 제 17 조  |

###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범위 | 절 차 | 비 고 |
|-----|----------|------|-----|-----|
|-----|----------|------|-----|-----|



|      |           |                   |                                                                    |  |
|------|-----------|-------------------|--------------------------------------------------------------------|--|
| 상속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본인이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8.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1) 겸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귀하가 [미식낙곱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겸업금지 되는 업종                       | 겸업허가 절차                                                          | 비고                        |
|----------------------------------|------------------------------------------------------------------|---------------------------|
| 불족발, 낙곱새를 당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판매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겸업허가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포함, 30일가량소요) -> 허가여부통지-> 완료 | 문의: 영업부<br>(043-266-3300)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미식낙곱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권장)    | 영업일수       | 비고                        |
|-------------|------------|---------------------------|
| 17:00~24:00 | 연중무휴(명절제외) | 문의: 영업부<br>(043-266-330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



질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자율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br>직계가족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청결(4항목)<br>(정리, 정돈, 청소,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br>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br>→ 완료       | 1회/1개월  | 각지역영업팀<br>및<br>본사영업팀 |    |
| 품질관리(품목별<br>당사메뉴얼준수<br>기준)                                                                                                                                                                                                                                                                             |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상태 확인<br>→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br>확인 → 완료     | 1회/1개월  | 상동                   |    |
| 친절도<br>(당사메뉴얼<br>기준)                                                                                                                                                                                                                                                                                   | 담당자 매장 방문 → 친절도 확인 →<br>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br>및 서명 → 완료 | 1회/1개월  | 상동                   |    |
| <p>■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및 위생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한다.</p> |                                                         |         |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미식낙곱새” 이미지 재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지역별단위 포함)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성격          | 부담비율                |                                                                                            | 분담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전체<br>행사<br>(지역별단<br>체<br>광고포함) | 브랜드 및<br>상품광고 | 총광고비<br>의 50%       | 총광고비의<br>50%(분담기준:<br>총광고비x(본사제품매출<br>액+각가맹점 영업지역 내<br>상주인구수=적수(분담비<br>율))x가맹점수=가맹점부<br>담금 | 행사계획공고->가맹점<br>부담액제시->가맹점의<br>행사참여 결정조사<br>(조사결과 전 가맹점<br>2/3이상 찬성 동의시<br>진행)-> 행사 종료후<br>최종 분담금 확정 | 대중매체<br>광고<br>이벤트 행사<br>(전국행사)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부담                | 없음                                                                                         |                                                                                                     |                                      |
| 판촉 행사                             | 통상적인<br>전체행사  | 행사 성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 |                                                                                            | 행사계획공고->가맹점<br>부담액제시->가맹점의<br>행사참여 결정조사<br>(조사결과 전가맹점<br>과반이상 찬성 동의시<br>진행)-> 행사 종료후<br>최종 분담금 확정   | 전국단위의<br>행사 및<br>지역별<br>가맹점<br>단체 행사 |

※ 상기의 분담비율은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2)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28 조 [“을”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영업금지의무]

- ① “을”은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② “을”은 “갑”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갑”이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9 조의 2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일금 오십만원(W5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 ② 점포개설 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8조 1항의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8조 1항의 가맹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위약금의 지급은 제8조의 가맹비반환과는 별개이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고            |
|----------|----------------|-----|---------------|
| 합계       |                |     |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문의 접수 | 즉시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                                                         |                  |                                 |
|---------------------|---------------------------------------------------------|------------------|---------------------------------|
|                     | -희망 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 1. 영업개시<br>이전 부담-금전<br>지급 방법 참조 |
|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br>및 상담 | -담당자 상담<br>-정보공개서 제공<br>-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br>-가맹계약서 제공 | 즉시               |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br>-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3일               |                                 |
|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br>-인접 가맹점 현장 실습 및 조사                        | 7일               |                                 |
| 가맹계약                | -가맹계약체결<br>-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정보공개서<br>제공후 15일 |                                 |
|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즉시               |                                 |
| 점포실측/ 설계            | -투자비 산출                                                 | 3일               |                                 |
| 실내외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일               |                                 |
|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20일              |                                 |
| 교육실시                | -점포운영 교육 실시                                             | 7일               |                                 |
| 초도물품 수령             | -영업전 물품 수령                                              | 1일               |                                 |
| 가맹점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즉시               |                                 |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점포개발은 점포 미보유시인 경우에만 실시되며 상권분석 또한 필요시 실시합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 구성                                                  | 분쟁 해결 절차                                   | 비 고 |
|--------------------------------------------------------|--------------------------------------------|-----|
| 가맹점관리 담당임원2, 지역별지사장 2인 및 영업소책임자2,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대표4인(총10인) | 분쟁 해결 신청->접수->사실관계 조사(15일 내외)->위원회 개최 및 결정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관련 사항이 가맹점 자율로 진행되기에 해당사항 없음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미식낙곱새”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 한                      | 비 고       |
|-----------------------|-----------------------|---------------|--------------------------|-----------|
| 신규 교육<br>(최초개설<br>교육) | 회사 소개/ 음식 가공<br>기타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10일<br>이내      | 필 수<br>교육 |
| 재교육                   | 신규교육 보완 사항            |               | 본사결정                     |           |
| 보수 교육                 | 신메뉴 가공<br>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br>인정 될 때 수시 |           |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미식낙곱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천원,<br>부가세포함) | 비 고       |
|-------------------|------|---------------------|-----------|
| 신규 교육<br>(최초개설교육) | 5일   | 2,2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재교육               | 1일   | 실비                  |           |
| 보수 교육             | 1일   | 실비                  |           |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 관련 계약조문 |
|---------------------------------------------------|---------|
| 최초개설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1회에 한하여 개설을 유예될 수 있음       | 제10조    |
|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제6조     |
|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제5조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비고 |
|----|----|----|------|----|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일)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비고 |
|--------------------|----|
| 해당없음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해당없음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

### [별첨] 3개 사업연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